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2015. 12



인사혁신처
윤 리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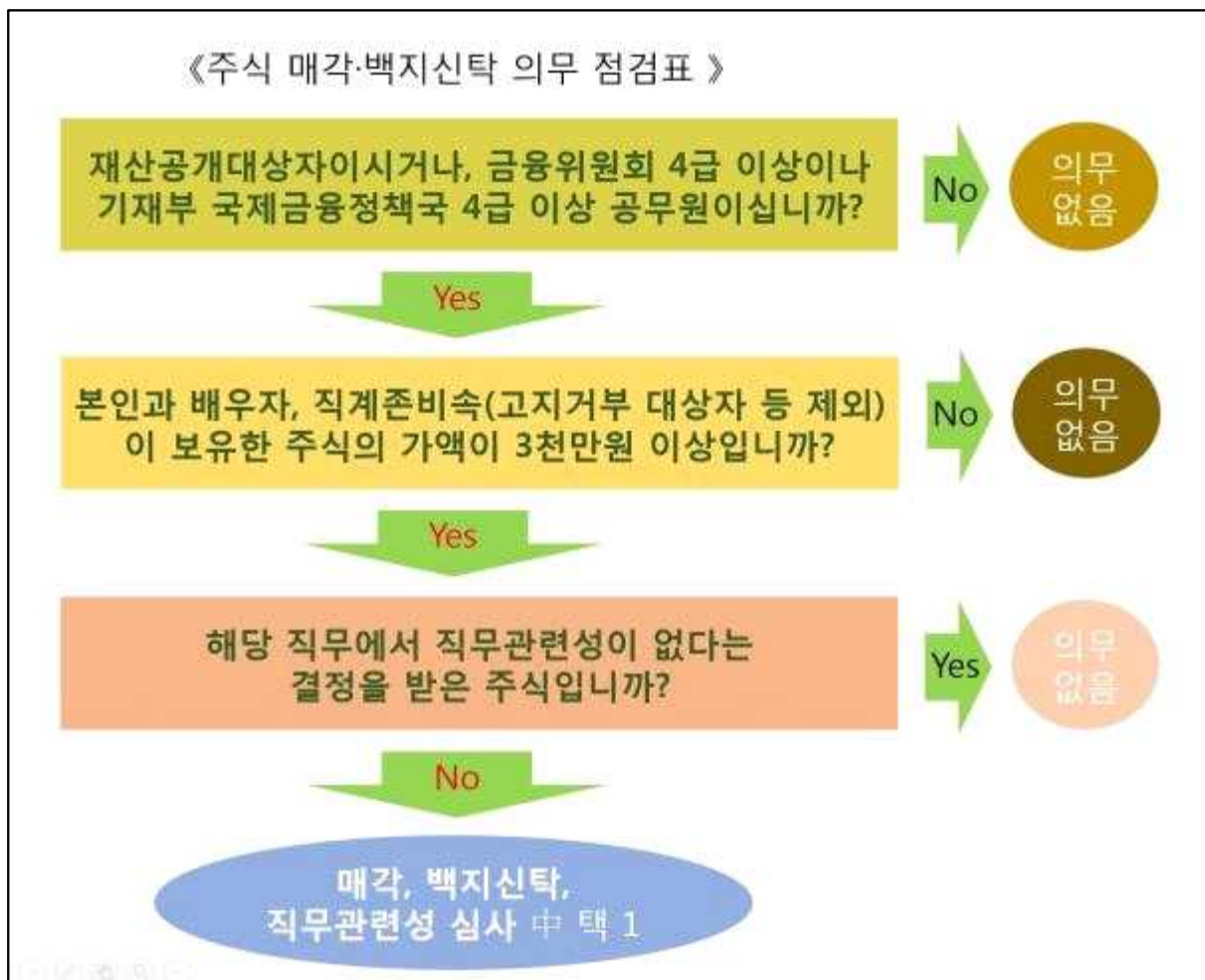
□ 정기재산 변동신고*와 주식 매각·백지신탁

- 전년도 12.31을 기준으로, 매년 정기재산 변동신고가 이루어짐
- 공직자들은 정기재산 변동신고를 통해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가족 등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이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보유주식 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규정됨(이하 공직자윤리법을 법으로 표시함)

⇒ 윤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숙지하여, 공개대상자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백지신탁 등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참고2) '15.6.30.기준 재산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법 제4조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법 제12조제4항)는 제외

□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05.12.16 고시)
-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05.12.16 고시)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 의무예탁기간 중인 우리사주* 주식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 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함

*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함

※ 단,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로 관리중인 주식 중 종목 당 3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주식
 -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 ※ 단,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와 직접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목당 3천만원이 아닌 전체 보유주식 가액 3천만원 기준이 적용됨. 투자자문사와의 경우 고객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주식가액의 산정방법(법 제4조제3항 제7호)**

- 상장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 K-OTC시장 거래 주식은 거래량 가중평균가로 산정
-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액면가격

II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기준일

⇒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 **신고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법 제14조의6제2항)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지방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된 날,
□□부의 A실장이 B실장으로 전보된 날

III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는 자는 신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전부 백지신탁을 하고
- 매각·백지신탁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와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체결 사실의 공개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통보
-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중 연월일 및 신고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IV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법 제14조의5제6항)

※ 청구인은 등록기관을 경유하여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하여야 함

□ 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총4면) 서식
- (담당직무 관련자료) 소속기관의 직제, 사무분장, 위임전결규정 등
 - ※ 의회의원 : 상임위원회 명단, 위원회 조례 등
-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상장주식 : 잔고증명서
 - 비상장주식 :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
 - ※ 우리사주 : 의무예탁기관이 명시된 예탁확인서
- (청구사유 관련자료) 최근 3년간 소속기관과 주식발행기업과의 공사·물품·용역계약, 보조금 지원, 인·허가, 수사·재판 실적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 (심사기간) 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판단기준) 보유주식 및 주식발행기업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법 제14조의5제8항)

□ 심사결정 · 통지에 따른 이행조치

-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 ⇨ **보유 및 거래 가능**
 - * 단, 직무가 변경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받은 주식
 - ▶ 총가액 **3천만 원 초과** ⇨ **1개월 이내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 ▶ 총가액 **3천만 원 이하** ⇨ **보유 가능** (단, 주가상승 등으로 3천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 * 예시) 삼성전자, 현대증권, SK 등을 총가액 3천만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가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삼성전자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삼성전자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유가능

V

의무위반시 제재

⇒ 신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아래의 제재를 취합니다.

* 총가액 3천만원이상 보유하고도 신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및 시정조치(법 제14조의4 제6항에서 제8조의2 준용)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2* 준용

* 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 과태료 부과(법 제30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결정하여, 의무위반 사실을 신고의무자의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

- 관할 법원에서 판단하여 과태료 금액을 결정 위반자에게 통보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 다음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경우
- 백지신탁 해지사유를 위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로 확인된 이후, **의무이행을 요청받고도 이를 일정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본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방식(명의신탁)으로 의무를 회피한 것이 발각될 경우** 아래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법 제24조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 조치

참고1 관련 서식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12.8.23>

주식 [[] 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앞쪽)

[]의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함

| | | | |
|--------------------|----|------|--------------------|
|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매각
[]백지신탁]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작성방법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일자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지에 적고, 증빙 자료(매각의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 백지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서 등)를 첨부하십시오.
-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업무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1. 매각(백지신탁) 내역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예탁 기관 | 계좌 번호 | 발행인 (주식명) | 종목 코드 | 수량 | 가액 (천원) | 매각 또는 신탁 일자 | 매각 또는 신탁 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예탁 기관 | 계좌 번호 | 발행인 (주식명) | 종목 코드 | 수량 | 가액 (천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가액은 보유주식별로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금액,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3. 매각 또는 신탁 일자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주식 [[] 매각 [] 백지신탁] 공개목록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성명 | |
|---------|---------------|--------|-------------|-----------------|-------------|-------------|
| | | | | | | |
| 본인과의 관계 |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 | 매각 또는 신탁 여부 |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 매각 또는 신탁 일자 | 매각 또는 신탁 회사 |
| | 발행인 | 보유주식 수 | | | | |
| 본인 성명 | | | | | | |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 | | | |
| 직계존속 | | | | | | |
| | | | | | | |
| 직계비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장관급 장교의 경우 소속은 국방부로 적고, 직위는 적지 마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되, 본인 외 친족의 성명은 적지 마십시오.
4. 주식 내역은 보유주식별로 발행회사명과 보유주식 수를 적으십시오.
5. 매각 또는 신탁 여부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처분한 방법을 적으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7.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8.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1쪽)

| | | | |
|--------------------|---|------|-------------------------------|
| 신청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 담당직무 내용 | ※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 |
| 심사청구 사유 | ※ 보유주식과 위 담당직무의 관련성 유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적으십시오.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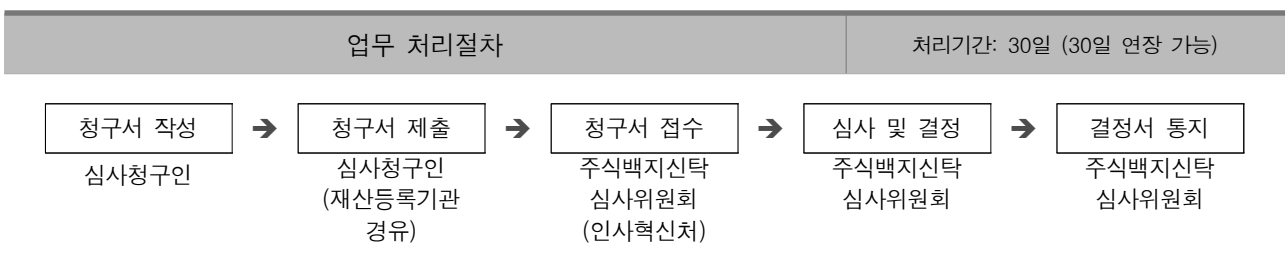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2. 직무관련성 여부

| 순번 | 소유자 | 내용 |
|----|------|--|
| 1 | 관련사항 | 보유주식 발행 기관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 관련 여부 |
| | 관련여부 | |
| 2 | 관련사항 |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관련 여부 |
| | 관련여부 | |
| 3 | 관련사항 |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특허 관련 여부 |
| | 관련여부 | |
| 4 | 관련사항 |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관련 여부 |
| | 관련여부 | |
| 5 | 관련사항 |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감독 관련 여부 |
| | 관련여부 | |
| 6 | 관련사항 |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 관련 여부 |
| | 관련여부 | |
| 7 | 관련사항 | 보유주식 발생 기업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 여부 |
| | 관련여부 | |
| 8 | 기타 | |

작성방법

위의 관련사항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적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3. 제출 자료

| 구분 | 제출 자료 내용 |
|------------------|----------|
| 1. 담당직무 내용 관련 자료 | (1) |
| | (2) |
| | (3) |
| | (4) |
| | (5) |
| 2. 보유주식 관련 자료 | (1) |
| | (2) |
| | (3) |
| | (4) |
| | (5) |
|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 | (1) |
| | (2) |
| | (3) |
| | (4) |
| | (5) |

작성방법

1. 담당직무내용 관련자료: '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직제 규정,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장주식은 잔고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3. 심사청구사유 관련자료: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신청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관련 자료에는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인가·허가·면허·특허,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공사 및 물품의 계약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도 포함됨).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함

| | | | | |
|-----|----|------|------|--|
| 신청인 | 성명 | (한글) | 소속 | 직위 (직급 등) () |
| | | (한자)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주소 | | | |

| | |
|-------------|--|
| 심사청구 기준일 | <input type="checkbox"/>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input type="checkbox"/>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input type="checkbox"/>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input type="checkbox"/> 직무(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주식을 3천만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날 |
|-------------|--|

| | |
|-------|---------------------------------|
| 지연 사유 | ※ 심사청구를 지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된 지연사유에 대하여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참고2

재산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 기관·단체명 |
|------------------------------|---|
| 1.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 한국은행 |
| 2.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 금융감독원 |
| 3. 회장·상임감사 |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4. 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공기업) | 1. 대한석탄공사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부산항만공사 4. 여수광양항만공사 5. 울산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 7. 인천항만공사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 한국가스공사 10. 한국감정원 11.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남동발전(주) 15. 한국남부발전(주) 16. 한국도로공사 17. 한국동서발전(주) 18. 한국마사회 1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 한국서부발전(주) 21. 한국석유공사 22. 한국수력원자력(주) 23. 한국수자원공사 24. 한국전력공사 25. 한국조폐공사 26. 한국중부발전(주) 27. 한국지역난방공사 28. 한국철도공사 29. 한국토지주택공사 30. 해양환경관리공단 |
| 5. 기관장 | 1.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 강동구도시관리공단 3. 강원도개발공사 4.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경기관광공사 7. 경기도시공사 8. 경기도의료원 9. 경기도체육회 10. 경기신용보증재단 11. 경남개발공사 12. 경상대학교병원 13. 경상북도관광공사 |

|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 기관·단체명 |
|-------------|----------------------|
| | 14. 고양도시관리공사 |
| | 15. 공무원연금공단 |
| | 16. 과천시시설관리공단 |
| | 1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 | 18. 광주과학기술원 |
| | 19.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 | 20. 광주도시철도공사 |
| | 21. 광주환경공단 |
| | 22. 교통안전공단 |
| | 23. 구리농수산물공사 |
| | 2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 | 2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 26. 국립공원관리공단 |
| | 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 | 2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 | 29.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 | 30. 국립암센터 |
| | 31. 국립중앙의료원 |
| | 32.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3. 국민생활체육회 |
| | 34. 국민연금공단 |
| | 35. 국방과학연구소 |
| | 36. 국방기술품질원 |
| | 37. 국토연구원 |
| | 38. 군포시시설관리공단 |
| | 39. 근로복지공단 |
| | 40. 기술신용보증기금 |
| | 41. 기초과학연구원 |
| | 42. 김대중컨벤션센터 |
| | 43. 김포도시공사 |
| | 44. 남양주도시공사 |
| | 45. 녹색사업단 |
| | 46.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 | 4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 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 49.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
| | 50. 대구도시공사 |
| | 51. 대구도시철도공사 |
| | 52. 대구환경공단 |
| | 5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5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 | 55. 대전도시공사 |
| | 56. 대전마케팅공사 |
| | 57. 대전신용보증재단 |
| | 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59.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 | 60. 대한법률구조공단 |
| | 61. 대한적십자사 |
| | 62. 대한지적공사 |
| | 63. 도로교통공단 |
| | 64. 독립기념관 |
| | 65. 동작구시설관리공단 |

|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 기관·단체명 |
|-------------|------------------------|
| | 6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 67. 부산교통공사 |
| | 68. 부산대학교병원 |
| | 69. 부산도시공사 |
| | 70. 부산시설공단 |
| | 71. 부산환경공단 |
| | 72. 부천시설공단 |
| | 7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7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75. 산림조합중앙회 |
| | 76. 서울대학교병원 |
| | 7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 | 78. 서울메트로 |
| | 79. 서울산업진흥원 |
| | 80. 서울신용보증재단 |
| | 8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 | 82.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 | 8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 | 84.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 | 85.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 | 86. 성남시청소년재단 |
| | 87.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 | 88. 수원시시설관리공단 |
| | 89. 시청자미디어재단 |
| | 90. 신용보증기금 |
| | 9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 92. 안산도시공사 |
| | 93. 안양시시설관리공단 |
| | 94. 에너지관리공단 |
| | 95. 에스에이치(SH)공사 |
| | 9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97. 영화진흥위원회 |
| | 98. 예금보험공사 |
| | 99. 예술의전당 |
| | 100. 용인도시공사 |
| | 101.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 | 102. 의왕도시공사 |
| | 103.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
| | 104. 인천광역시체육회 |
| | 105. 인천교통공사 |
| | 106. 인천도시공사 |
| | 107.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 | 108.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
| | 109.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
| | 110.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 111.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
| | 112.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
| | 113.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
| | 114.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 | 115.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
| | 116.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
| | 117.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

|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 기관·단체명 |
|-------------|------------------------|
| | 118.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
| | 119.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
| | 120. 재단법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 | 121.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
| | 122.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
| | 123.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
| | 124.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
| | 125.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 | 126.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 | 127.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 | 128.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
| | 129.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
| | 130.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
| | 131.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
| | 132.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 | 133.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
| | 134.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 | 135.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
| | 136.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
| | 137.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
| | 138.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
| | 139. 재단법인 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 |
| | 140.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
| | 141.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
| | 142.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
| | 143.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
| | 144.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
| | 145. 재외동포재단 |
| | 146. 전남개발공사 |
| | 147. 전남대학교병원 |
| | 148. 전남신용보증재단 |
| | 149. 전북개발공사 |
| | 150. 전북대학교병원 |
| | 151. 전쟁기념사업회 |
| | 152.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 | 153. 제주에너지공사 |
| | 15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 | 155. (주)백스코 |
| | 156. (주)엑스코 |
| | 157.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 | 158. (주)킨텍스 |
| | 159. (주)중소기업유통센터 |
| | 160. 중랑구시설관리공단 |
| | 161. 중소기업은행 |
| | 162. 중소기업진흥공단 |
| | 163. 지방공기업평가원 |
| | 164. 체육인재육성재단 |
| | 165. 축산물품질평가원 |
| | 166. 충남대학교병원 |
| | 167. 충북개발공사 |
| | 168. 충북대학교병원 |
| | 169. 충청남도개발공사 |

|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 기관·단체명 |
|-------------|-------------------|
| | 170. 태권도진흥재단 |
| | 171. 태백관광개발공사 |
| | 172. 평택도시공사 |
| | 173. 하남도시공사 |
| | 174.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 | 175. 한국가스안전공사 |
| | 176. 한국개발연구원 |
| | 17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178. 한국고용정보원 |
| | 179. 한국고전번역원 |
| | 18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 18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 | 18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 183. 한국과학기술원 |
| | 18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 185. 한국과학창의재단 |
| | 186. 한국광해관리공단 |
| | 18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188. 한국교육방송공사 |
| | 18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 190. 한국국방연구원 |
| | 191. 한국국제교류재단 |
| | 19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 | 193. 한국국제협력단 |
| | 194. 한국기계연구원 |
| | 195.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 | 19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 19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198. 한국농어촌공사 |
| | 199. 한국디자인진흥원 |
| | 20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 201. 한국무역보험공사 |
| | 202. 한국문화예술포육진흥원 |
| | 203. 한국문화예술회원회 |
| | 204. 한국방송공사 |
| | 2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206. 한국벤처투자(주) |
| | 20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 208.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 | 2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2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2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 212. 한국사학진흥재단 |
| | 21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2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 215. 한국산업은행 |
| | 216. 한국산업인력공단 |
| | 21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2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219. 한국소비자원 |
| | 220.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 | 221. 한국수출입은행 |

|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 기관·단체명 |
|-------------|------------------|
| | 222. 한국식품연구원 |
| | 223. 한국실크연구원 |
| | 224. 한국어촌어항협회 |
| | 22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226. 한국연구재단 |
| | 227. 한국영상자료원 |
| | 22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 229. 한국원자력연구원 |
| | 230. 한국원자력의학원 |
| | 23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 | 23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23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 234. 한국인터넷진흥원 |
| | 235. 한국임업진흥원 |
| | 236. 한국자산관리공사 |
| | 23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238. 한국장학재단 |
| | 239. 한국저작권위원회 |
| | 240. 한국전기안전공사 |
| | 241. 한국전기연구원 |
| | 24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 243.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244. 한국정보화진흥원 |
| | 24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 246. 한국주택금융공사 |
| | 24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 248. 한국천문연구원 |
| | 24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 250. 한국철도시설공단 |
| | 25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252. 한국콘텐츠진흥원 |
| | 253. 한국투자공사 |
| | 2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 255. 한국학중앙연구원 |
| | 256. 한국한의학연구원 |
| | 25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 25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 | 25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260. 한국화학연구원 |
| | 261. 한국환경공단 |
| | 262. 한전KDN(주) |
| | 263. 한전원자력연료(주) |
| | 264. 화성도시공사 |